

■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[별표 12] <신설 2024. 5. 9.>
 2024년 5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

관세율표 번호		품명	규격 등	세율 (%)	한계수량
호	소호				
0704		양배추 · 꽃양배추 · 콜라비 (kohlrabi) · 케일(kale)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용 배추속 (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)			
0704	90	기타	배추(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)	0	수입전량